[방위사업청 공고 제2026-133호]

방위사업청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방위사업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1월 4일
방위사업청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채용분야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	근무기간	근무예정지
통·번역	통번역A	행정6급 (일반임기제)	1명	북미지역협력담당관	임용일로부터 2년	경기 과천

※ 일반임기제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근무예정부서는 계획상 '28년 하반기 중 대전정부청사 인근으로 이전 예정
※ 임기제는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전보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상세내용은 직무기술서(p.18) 참조]

채용분야 (지원코드)	주요 담당업무 내용
통·번역 (통번역A)	○ 소속부서 관련 회의·협상·접견 통역, 회의록 작성 ○ 소속부서 관련 대외협력(대사관 등), 국외 출장 ○ 소속부서 관련 서한·합의문·계약서 등 각종 문서 번역 ○ 소속부서 관련 국제행사 통역 및 일반 업무 ○ 청 본부 및 소속기관 소관업무의 통번역 지원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유의사항

□ 응시자격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포함)이 가능한 자

□ 응시자격요건 유의사항 ※ (붙임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p.18) 참조

※ 학위 요건의 경우 학위 취득 판단기준일 : 임용예정일('27.02.15.) 기준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 시 응시 가능
※ 경력, 학위 요건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1개 선택하여 응시
예) 경력①☑ / 경력② / 경력③ / 학위④ / 학위⑤ / 학위⑥
→ 자격증, 경력 및 학위 요건을 각각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 응시자격요건 중복 선택(예, '경력②☑,학위④☑'), 미선택 등 오기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6.12.30.예정) 기준, 학위 소지 여부는 임용예정일('27.02.15.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이력서 기재사항은 유효한 증명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 사항에 한해서만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유효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항은 불인정 될 수 있음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5년, 시간선택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해당되는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장애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시 '응시요건 불충족' 처리)

○ '경력' 요건의 경우,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예) 임용예정 직무분야 '공무원(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 2년'과 '민간경력 1년'을 합산하여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3년'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은 직무기술서에 제시된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휴직기간 제외)을 의미하며, 유효한 증명서류(경력증명서 등)로 입증 가능한 사항에 한해 인정됨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임용예정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재), 근무형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전임/주당 근무시간 표시)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입증이 어려운 경력은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으로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본인이 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하여 공고문상의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담당업무가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직무연관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원서 접수 시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함(업무분장표,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단, 해당 기관의 공식 문서가 아닌 기관 날인이 없는 임의의 내부 출력자료 등은 유효한 증빙서류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음

※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에 상기 관련 내용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필요시 '별지서식 8'(31 페이지)을 사용하여 제출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함

※ 공공기관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대학조교 또는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석·박사 학위과정, 인턴, 교육생, 실습생 경력은 제외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원서 접수 시 해당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 최종 결정

○ 프리랜서, 자원봉사, 단체활동, 개인사업자 경력 등의 경우 당해 직위와 관련된 일정 규모·수준 이상의 연구·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경력 일부 인정

※ '개인사업자' 경력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명(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및 해당 기간 매출·소득액, 계약서 및 포트폴리오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의회 판단에 따라 일정 범위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 동일 기간에 경력 중복 시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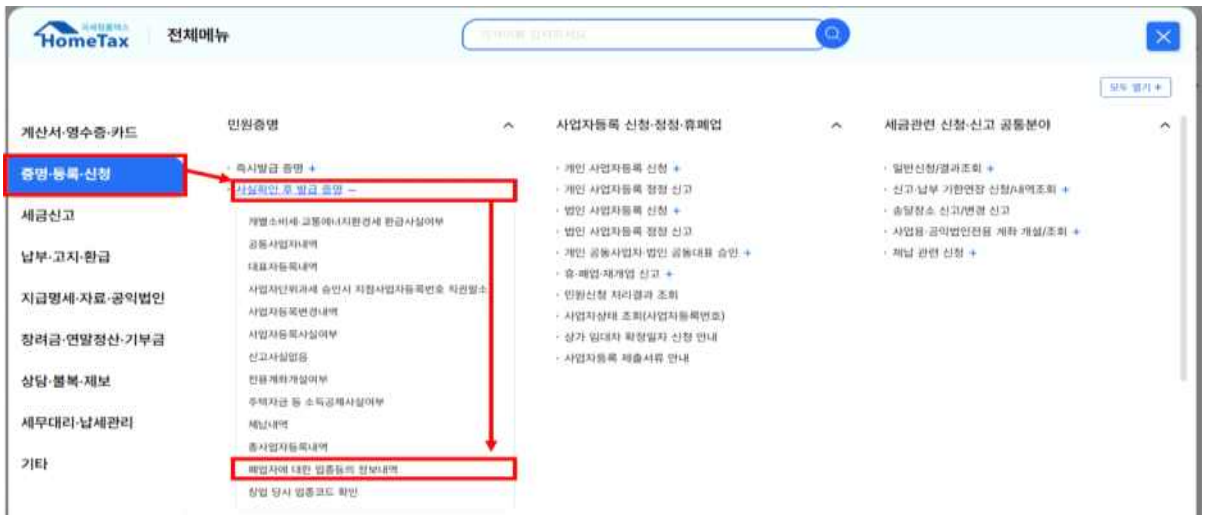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함

* ① 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학위’ 요건의 ‘임용예정 직무분야’ 인정 여부는 학위명, 학위논문 또는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하며, ‘수료’는 불인정

-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학위취득(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위취득증명서(졸업증명서)’를 임용예정일(‘27.02.15.)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한 내에 '학위취득증명서(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

□ 우대요건 유의사항 ※ 〔붙임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p.18〕 참조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6.11.18.)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은 연차별 차등 우대되며, 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 합산이 가능함

- 다만,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은 우대요건에서 제외됨

○ ‘경력’은 직무기술서에 제시된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휴직기간 제외)을 의미하며, 유효한 증명서류(경력증명서 등)로 입증 가능한 사항에 한해 인정됨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임용예정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재), 근무형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전임/주당 근무시간 표시)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입증이 어려운 경력은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으로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본인이 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하여 공고문상의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담당업무가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직무연관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원서 접수 시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함(업무분장표,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단, 해당 기관의 공식 문서가 아닌 기관 날인이 없는 임의의 내부 출력자료 등은 유효한 증빙서류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음

※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에 상기 관련 내용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필요시 '별지서식 8'(31 페이지)을 사용하여 제출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함

※ 공공기관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대학조교 또는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석·박사 학위과정, 인턴, 교육생, 실습생 경력은 제외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원서 접수 시 해당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 최종 결정

○ 프리랜서, 자원봉사, 단체활동, 개인사업자 경력 등의 경우 당해 직위와 관련된 일정 규모·수준 이상의 연구·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경력 일부 인정

※ ‘개인사업자’ 경력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명(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및 해당 기간 매출·소득액, 계약서 및 포트폴리오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의회 판단에 따라 일정 범위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 동일 기간에 경력 중복 시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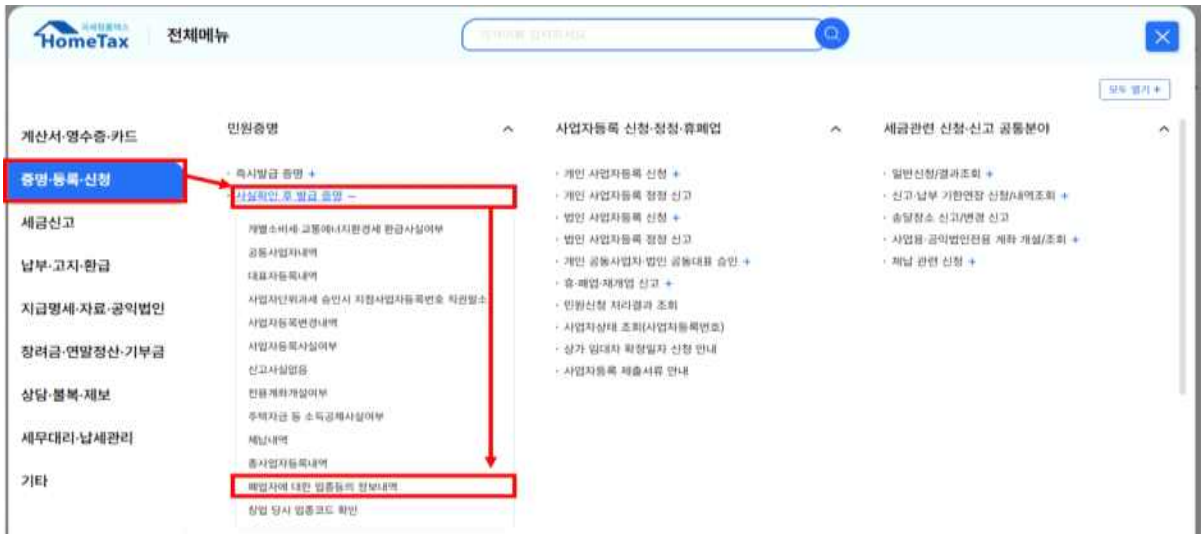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함

* ① 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영어 통번역 학위는 석사 이상만 해당되며, 학위는 등급별로 차등 우대되며, '수료'는 불인정함

- 관련성 인정 여부는 학위명, 학위논문,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한 학위는 우대요건에서 제외됨
- 2개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가장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 아래 자격증 中 최대 1개만 인정하며, 동종 자격증은 등급 무관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舊 1·2급)

5 시험 방법

□ (제1차) 서류전형

○ 직위별(지원코드)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하여 적격(합격) 또는 부적격(불합격)을 판단

○ 단, 응시자격요건 적격 응시인원이 직위별(지원코드)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로 합격자 결정

* 적극적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 (제2차) 면접시험

○ 채용분야 임용예정 직위별(지원코드)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심층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① 소통·공감 :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 :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 :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 :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 (평가방식) 개별면접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공고	'26.11.4.(수) ~ 11.18.(수)	· 나라일터, 방위사업청 누리집(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6.11.16.(월) ~ 11.18.(수)	· 등기우편접수(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26.12.17.(목) 예정	· 나라일터, 방위사업청 누리집(홈페이지)
면접시험	'26.12.29.(화)~ 12.30.(수) 예정	· 방위사업청 회의실 **(장소 : 대전청사(우선) 또는 과천청사)**
최종합격자 발표	'27.1.28.(목) 예정	· 나라일터, 방위사업청 누리집(홈페이지)
임용예정일	'27.2.15.(월) 예정	

※ 위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26. 11. 16.(월) ~ 11. 18.(수)

□ 접수 방법 : 우편(등기) 접수

○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 불가, 봉투 겉표지에 '임기제 공무원 채용 응시원서 재중' 기재

※ (35222) 대전 서구 월평중로 21, 방위사업청 공무원인사팀 채용담당자

○ '응시번호'는 '26.11.27.(금)까지 휴대전화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번호 미수신 시 담당자(☎ 02-2079-6054)에게 확인

□ 유의 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 드림

○ 경력, 자격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불합격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하여 드리며,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됨

※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라며, 기재 착오·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8 보수 수준

○ 연봉액은 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 범위에서 임용예정자의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참고. 2026년도 연봉한계액 범위> (단위: 천원)

구 분	일반임기제 6호	관련 근거
상한액	81,945	'26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기준
하한액	41,288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9 기타 유의사항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에 따라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

※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 :「공무원 임용시험령」제51조의2 ①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의미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에 따른 임용추천 유예는 본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음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임

○ 경력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임기제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거나 내용이 부족하여 서류전형 등록 상의 내용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 여부를 직접 조회·확인하며, 고의로 응시원서·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되며,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증빙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 진위여부 확인 결과 응시자격요건 부적격자(경력·학위·자격증 요건 불충족)로 확정된 경우, 서류전형 합격이 취소되며 최종합격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증빙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 진위 확인과정에서 부적격자가 발생한 모집단위의 경우, 해당 모집단위 내 면접시험 평정 차순위자(면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개별 안내 할 예정임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음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 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방위사업청 공무원인사팀(02-2079-6054)으로 문의 바람

10 제출 서류

※ 증빙자료(사본 가능)가 첨부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력, 학위,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음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외국학위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본)을 함께 첨부하고 면접시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확인 지참

※ 아래 번호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모든 서류에 스테플러, 띠지 사용 금지)

구분	제출서류	비 고
필수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	·**정부수입인지 부착 : 7,000원** ※ 전자수입인지(A4 크기)는 제출서류 가장 마지막에 첨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	·응시자격요건, 우대사항 중 증빙가능한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 후 증빙자료 첨부 **※ 유효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	·A4용지 2매 이내
	4.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4)	·A4용지 2매 이내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5)	·확인 후 서명 필수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별지서식 6)	·확인 후 서명 필수
	7. 복수국적자 확인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7)	·확인 후 서명 필수 (복수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제출)
	8.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학위취득(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추후 임용예정일(2027.02.15.)까지 학위취득증명서 별도 제출 ·학위별(학사, 석사, 박사) 각 사본 1부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제출 가능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9.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번호(남·여 공통) 및 병역사항(남성) 기재된 것으로 발급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구분	제출서류	비 고
해당자 제출	**10.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근무기간별 담당 업무(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나타나야 함), 주당 근무시간 등을 명확히 기재, 미기재시 해당 경력은 불인정 될 수 있음 ※ 전체 경력에 대해 근무기간별(연·월·일) 근무형태(전임(주40시간), 비전임(주00시간), 시간제(주00시간)), 직위(급), 담당업무(상세) 정확히 기재,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반드시 첨부 ·증명서상의 담당분야가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와 함께 채용분야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해당 기관 공식 문서) 첨부 필수** ·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11. 경력(재직)증명서 1부(별지서식 8)	·10번의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렵거나 상세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등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 서식을 발급부서에 확인받아 제출
	12. 학위논문 요약서 1부 증빙서류(별지서식 9)	·별첨의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학술지 표지, 내용, 작성자, 게재일자 등 포함) ※ 외국어로 되어있을 경우 한글 요약서 반드시 제출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제출 가능
	13. 그 외 증빙서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舊 1·2급) 자격증 사본
	14.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5년, 시간선택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해당되는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장애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시 '응시요건 불충족' 처리)**
필수	**15. 응시자 체크리스트** (별지서식 10)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시행 2026. 10. 22.] [법률 제21574호, 2026. 4. 21., 일부개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 칙 <법률 제21574호, 2026. 4.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결격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라목 및 같은 조 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국가공무원법」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지원코드	직무분야	임용예정 직급	근무예정부서	채용인원
통번역A	통·번역	일반임기제 6급(6호)	국제협력관 북미지역협력담당관	1명

주요업무	○ 소속부서 관련 회의·협상·접견 통역, 회의록 작성 ○ 소속부서 관련 대외협력(대사관 등), 국외출장 ○ 소속부서 관련 서한·합의문·계약서 등 각종 문서 번역 ○ 소속부서 관련 국제행사 통역 및 일반 업무 ○ 청 본부 및 소속기관 소관업무의 통번역 지원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집행관리 능력, 조정능력
필요지식	○ 외국어(영어) 능력 및 국제협상 일반지식 ○ 무기체계 및 방위산업에 대한 일반지식

응시자격요건	①~⑥ 중 하나 이상을 갖춘 경우 응시 가능**(반드시 택 1)**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영어 통역 및 문서번역 관련 경력(강의경력 불인정) **[임용예정 직무분야 학위]** 영어 통번역학, 영어영문학, 영어교육학 등 영어 관련학	
	경력	**※ 최종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기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5년, 시간선택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①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 경력)** ②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 경력)** ③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 경력)**
	학위	④ 임용예정 직무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⑤ 임용예정 직무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⑥ 전문대학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 소지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요건 (서류전형에 한함)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연차별 차등 우대) ※ 공무원경력+민간경력 합산 가능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은 우대 제외 ○ **영어 통번역 학위**(석사 이상, 학위 등급별 차등 우대, 수료 불인정)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한 학위는 우대요건에서 제외 ※ 2개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가장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舊 1·2급) ※ 동종 자격증 등급 무관, 최대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응시자 제출서류 §

(별지서식 1~10)

별지 서식 1

응 시 원 서(공통)

본인은 방위사업청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방위사업청장 귀하

<table>
<tr><td>※응시번호</td><td></td><td rowspan="2">성 명</td><td>(한글)</td><td rowspan="2">서명</td></tr>
<tr><td>지원코드
(채용분야)</td><td>통번역A</td><td>(한자)</td></tr>
<tr><td>생년월일</td><td>0000.00.00.</td><td>복수국적
해당여부</td><td colspan="2">예 □ (외국국적명)
아니오 □</td></tr>
<tr><td>병역사항
(남성)</td><td colspan="3">필 □, 면제 □, 미필 □, 6개월 내 전역 □</td><td rowspan="3">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휴대전화
(긴급전화)</td><td></td><td>전자
우편</td><td colspan="2"></td></tr>
</table>

응시원서 작성요령

◈ 모든 응시자 제출서류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워드 작성(수기 작성 금지) 후 자필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ㅇ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개인별 휴대전화 SMS로 별도 통보)

ㅇ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연락처의 경우 긴급연락이 가능한 곳으로 기재

ㅇ 복수국적 : 복수국적 여부 체크 후 복수국적자는 외국국적명 기재

ㅇ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주민등록초본 첨부)

ㅇ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

ㅇ 정부수입인지 : 정부수입인지 필수 부착

- 7,000원
- 우체국 등에서 현장 구매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온라인 구매 (행정수수료용)
- 우표형태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인 경우, 제출서류 마지막에 별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또는 해당 증빙자료 첨부

ㅇ “서명”란 자필서명 필수

별지 서식 2

성명 :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필수 기재

응시번호		지원코드	통번역A	자격요건 (택 1)	경력① ☐	경력② ☐	경력③ ☐
					학위④ ☐	학위⑤ ☐	학위⑥ ☐

나. 응시자격 ※ '가. 공통사항'에서 택한 응시자격요건에 맞게 작성

	근무기관	근무기간 (근무년월일수)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경력	□□□□□ (○○○과)	`00.0.0~`00.0.0 (0년0개월0일)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 5.1.~12.31(질병휴직)	과장 (4급)		전임/비전임 (주 40시간)

학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종류

다. 우대요건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근무기관	근무기간 (근무년월일수)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경력					

학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종류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번호	취득일자	발급기관

라. 시험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방위사업청 근무경력 해당 ☐ 미해당 ☐

경력	근무부서	근무기간	비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 우대사항란은 응시자격으로 제출한 경력·학위 외 별도 경력·학위만 작성

※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행, 쪽수를 늘려 작성가능, 글씨크기 등 적절히 조절

이력서 작성 요령

가. 공통사항

- **서류전형 등은 이력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응시자는 이력서 각 항목(공통사항, 응시자격, 우대사항 등)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오기재 시 불인정 될 수 있음**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자격요건 : 직무기술서 응시자격요건 6개(경력①~③, 학위④~⑥) 中 반드시 1개만 선택 후 기재(예: "경력③☑")**

※ 【붙임2】 직무기술서(18페이지) 참조하여 작성

※ 자격요건 중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본인이 선택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은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적격 처리됨

: 예시) 경력①☑ / 경력② / 경력③ / 학위④ / 학위⑤ / 학위⑥

→ 경력 및 학위 요건을 동시에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예)'경력②☑,학위④☑')

※ 응시자격요건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2개 이상 기재할 경우 미지원, 중복지원 등으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나. 응시자격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학위 요건의 경우 학위 취득 판단기준일 : 임용예정일('27.02.15.) 기준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 (예. 공공A분야 경력 요건 중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에서 13년의 경력이 있을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8년의 경력은 '나.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5년의 경력은 '다.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최종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기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5년, 시간선택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해당되는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장애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시 '응시요건 불충족' 처리)

- 최근 경력이 위로 오게 하여 작성
- 첨부하는 경력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재직증명서**를 제출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 또는 '비전임'으로 표시하고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학위】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 학사-석사-박사 순으로 기재,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수료는 미인정), 전공·학위종류·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

다.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경력】 관련 경력 중 응시자격요건으로 기재한 경력 외 별도 경력 기재

※ 동일 기관의 경력 기간 중 일부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우대요건으로 활용 가능함

※ 경력은 응시자격 충족 이후 경력을 기재하고,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 통상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학위】 영어 통번역 학위(석사 이상) 기재

【자격증】 직무기술서에 나열된 자격증 소지 시 기재

응시자의 경력·학위·자격 등은 증빙서류로 입증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세부경력사항 미기재 등의 사유로 기재사항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경력·학위·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음

별지 서식 3

자 기 소 개 서

1. 현재까지 귀하가 담당했던 업무에서의 실적을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2.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 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3. A4용지 2매 이내로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별지 서식 4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분야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직무에 대한 이해, 소견 및 응시 취지 ②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을 A4용지 2매 이내로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별지 서식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방위사업청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방위사업청장 귀하

별지 서식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다른 공무원 시험의 실시기관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민감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방위사업청장 귀하

별지서식 7

복수국적자 확인을 위한 동의서

□ 복수국적자 확인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은 방위사업청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복수국적 여부 조회를 위한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2) 제공목적 : 공무원 채용관리(복수국적 조회)
(3) **제공하는 항목 :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에는 채용의 제한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방위사업청장 귀하

별지 서식 8 ※ 해당자만 제출

경력(재직) 증명서

※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필요시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가능(ex. 통·번역 업무를 했음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등)

※ 아래 「경력사항」의 근무기간은 「담당업무①」별로 구분해서 작성할 것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력사항	근무기간		업체명(근무처)	직위(직급)	담당업무①	근무형태	비고②
	부터	까지					
	12.6.30	14.7.1	㈜0000	사원	군수품 구매	주00시간 근무	
	14.7.2	16.7.1	㈜0000	사원	해외 수출	주00시간 근무	

상벌사항	포 상			징 계		
	연월일	종 류	해당기관	연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발 급 자	
소속	
직위	
성명	(인/서명)

◉ 증명기관명 :

◉ 주소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인/서명)

① 담당업무 :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비고 : 기타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③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 발급자 : 경력(재직)증명서 담당직원 / 확인자 : 증명서 담당부서의 과·팀장

별지 서식 9 ※ 해당자만 작성·제출

학위논문 요약서 (석사·박사)

학위개요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심사 연월일 : ◉ 세부전공 : ◉ 지도교수 :

[주요내용 요약]

Ⅰ. 연구목적

Ⅱ. 연구내용

Ⅲ.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 A4용지 3매 이내, 논문표지/논문제목/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을 함께 제출**
※ 박사 및 석사 학위 건별로 작성

별지 서식 10

응시자 체크리스트

※ 점검항목에 대해 확인여부 란에 "√" 또는 "해당없음" 표기

점검항목	확인여부
1. 채용직급, 담당업무, 계약기간, 근무예정지, 보수수준을 확인하였습니까?	
2.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여 응시자격요건을 선택하였습니까?	
3. 이력서에 관련되는 모든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였습니까?	
4. 이력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에 대해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였습니까?	
4-1. 첨부된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성명·연락처, 기관 직인이 표기되었습니까?	
5. 이력서에 기재한 모든 학위 및 자격증에 대해 증명서를 첨부하였습니까?	
6. 첨부서류 중 외국어로 표기된 증명서가 있는 경우 한글 공증 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였습니까?	
7. 공고문 – '10 제출서류'에 기재된 모든 제출서류가 빠짐없이 포함되었습니까?	
7-1. (인), (서명)이 표기된 곳에 빠짐없이 자필서명 등 하였습니까?	
8.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거짓 없이 기재하였습니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방위사업청장 귀하